(붙임 4)

「CBDC 모의실험 연구 보안컨설팅」 용역계약서

(2022. .)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____(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CBDC 모의실험연구 보안컨설팅」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CBDC 모의실험 연구 보안컨설팅 용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CBDC 모의실험 연구 보안컨설팅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이 계약에 따라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에 제공하는 일체의 노무를 말한다.

② "용역 완료"란 제3조의 모든 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용역 내용과 계약 변경) ① 이 계약에 따라 "업체"가 수행할 용역의 내용은 <별첨> '용역제공 내역서'와 같다. "은행"은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용역 완료보고서 1부 이상을 포함한 산출물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_____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2022년 __월 __일부터 2022년 __월 __일까지로 하며, "업체"의 용역 착수일자는 2022년 __월 __일로, 용역 완료기한은 2022년 __월 __일로 한다.

② “업체”가 천재지변 또는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5영업일(이하 영업일은 “은행”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은행”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은행”과 “업체”는 계약금액은 변동 없이 완료기한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천재지변 등 용역수행의 장애사유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만큼 완료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제4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 금_____원)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즉시 “은행”에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수행) ①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은행”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서면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총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용역수행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업체”의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과 “업체”의 서면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은행”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인

력의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전력 등 기반시설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기본 집기 및 PC등 전산기기는 “은행”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⑥ “업체”의 용역수행 결과가 이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은행”이 판단한 경우에는 “업체”는 이를 보완 또는 재수행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제11조에 따라 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개월 후의 그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업체”에 합격 당시 발견할 수 없었거나 합격 이후 발생한 용역완료보고서 등 결과물의 오류 기타 이 계약 목적에 비추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인력)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용역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에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 용역인력이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14조, “은행”의 보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용역인력 중 특히 “은행”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상주인력”이라 한다)의 분야별 투입인원, 자격요건 등은 “은행”의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③ 상주인력의 용역수행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용역수행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장애발생 시 등의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용역수행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용역수행 시간 변경 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은행”에 용역수행 시간 변경 사

유 및 예상 변경시간을 알려야 한다. “업체”는 “업체”의 사정 또는 귀책으로 용역수행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업체”는 상주인력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용역수행 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하며,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체”는 상주인력과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⑤ “업체”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전력 등의 기반시설 유지비용은 “은행”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업체”는 기반시설 유지비용을 제외한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공받은 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업체” 또는 “업체”의 용역인력 관리소홀로 인해 제공받은 시설에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보상할 의무

⑥ “업체”는 상주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7영업일 이전까지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은행”의 보안정책에 따라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책임)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역인력의 관리·감독 책임(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를 포함한다) 및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업체”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은행” 또는 “은행”의 사용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은행”의 물품, 문서, 설비현황, 기타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3. “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은행”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은행”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
5. “은행”의 영업점 또는 용역수행 장소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

하여 “은행”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보유, 은닉, 훼손, 처분하는 행위

6. 그 밖에 경영 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

③ “업체”는 용역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⑤ “업체”는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와 용역인력의 행위로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 또는 용역인력의 신체상의 재해 등에 관하여 고용주로서 단독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업체”는 용역인력과의 관계에서 개별 약정,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 교육, 그 밖에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분쟁이 발생하거나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체”는 “은행”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업체”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0조(현장책임자)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를 대리할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2.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② “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체”는 현장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상당한 기일 전에 “은행”에 현장책임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등을 현장책임자 또는 “업체”에 전달하며, 용역인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달 또는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다.

제11조(검사) ① “업체”는 용역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용역 완료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2항의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은행”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제11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및 보안)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은행”의 영업점 또는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용역인력의 신원, 고의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해 용역인력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이 계약상 비밀 및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체” 또는 용역인력은 이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은행”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 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은행”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업체”가 제2항 또는 “은행”이 따로 정한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가 “은행”에 제출한 <보안 특약서>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은행”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전산기기 및 기억매체를 교체, 수리, 반납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저장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 삭제하고 “은행”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은행”이 반환을 요구한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업체”가 제5조제1항의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에 12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은행”이 정하는 기일까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1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 완료기한 이후에 제11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 완료기한을 경과하여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용역 완료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의 완료가 늦어졌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은행”의 책임으로 용역의 진행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등) ① “은행”은 용역수행 과정의 점검, 계약이행 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제5조 제1항의 총 계약기간 동안 “은행”이 제11조에 의한 검사를 하거나 제3조에 의한 용역 완료보고서 등에 따른 용역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식에 대한 설명 또는 교육 등 기술자문을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업체”는 전문의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를 제4조의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에 착수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에 의해 합병(“은행”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발생 등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업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 중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이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은행”은 제3조의 용역 업무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업체”가 해제 또는 해지된 일부에 대한 용역(이하 본항에서 ‘일부 용역’)을 이미 진행한 경우, “업체”는 제3조의 용역 업무, 제4조의 계약금액, 일부 용역에 투입된 용역인력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용역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은행”은 이에 대한 검사 후 정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의 검사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일부 용역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① “은행”과 “업체”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은 “업체”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은행”에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업체”에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업체”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은행”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제4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행”의 “업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은행”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 “은행”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용역 결과의 훼손, 멸실 등의 위험은 “업체”가 부담하며 “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귀속) ① “업체”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용역 결과물, 저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그 밖에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 “업체”는 서면에 의한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은행”의 첫 영업일에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이 타방에 하는 의사표시·통지 등은 사전에 서면으로 타방에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일방의 주소지 또는 FAX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 “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제안요청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은행”·“업체”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전속관할 법원은 “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특약사항) ① “업체”는 컨설팅 용역을 완료한 후 제7조 7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본 건 산출물 설명 및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기술자문(방문, 전화응대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를 제4조의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은행”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은행”과 “업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용역제공 내역서 1부. 끝.

2022년 ___월 ___일

“은행”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FAX) 02-750-6519
한국은행 총재 이 창 용
위 대리인
금융결제국장 이 종 렬 ㊞

“업체” :

<별 첨>

용역제공 내역서

이 용역제공 내역서에는 본 계약 하에서 “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보안컨설팅」을 위하여 “업체”가 제공할 용역의 대상 업무 및 수행내역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본 용역제공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제안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은행”과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 대상 업무

□「제안요청서」“Ⅰ. 사업 개관”의 “3. 사업범위”에서 정한 내용

2. 수행 내역

□ 프로젝트 준비

○ 프로젝트 전 기간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CBDC 모의실험 연구 보안컨설팅 사업 전(全) 과정 수행

○「제안요청서」“Ⅱ. 제안 요청 내용”에서 정한 내용

□ 기타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